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19가단3320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상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주형, 강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김경수, 이진선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양산시 D 대 1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개인사업체 F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7. 4. 20. E의 대표자인 C로부터 “물품대금채무 합계 87,202,204원이 남아 있고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분할변제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9차225호로 ‘E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29,954원 및 2017. 4.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6. 18.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7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4, 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C가 2017. 4. 20. 원고에게 87,202,204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1,229,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퇴직 후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공인중개사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도 공인중개사 G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까지 C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인근 두 필지(양산시 H 대 201.4㎡ 및 I 대 204.2㎡)의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고, 총 매수대금은 5억 원으로(그중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은 177,000,000원) 당시

주변 부동산의 일반적인 시세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마쳐진 사실도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지급을 마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④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이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성